

## 2. 開發利益還收에 關한 法律 施行規則中 改正令

建設交通部令 第93號 1997. 2. 15

### 주 요 골 자

- 가.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농수산물종합처리장과 농수산물물류센타를 농수산물공판장이나 농수산물집하장과 마찬가지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함(제3조의 2 제4항).
- 나.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의 고지는 사업인가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, 고지사항에 부과대상 및 개발비용산출내역서의 제출의무 등을 포함하도록 함(제15조의 2).
- 다.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썰매장업을 골프장업이나 골프연습장업과 마찬가지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 포함시킴(별표 2).

### 개 정 이 유

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(1996. 12. 31, 대통령령 제15238호)으로  
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,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 
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주 요 내 용

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항 중 “(이하 “시장·군수”라 한다)”를 “(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”로, “건설부장관”을 “건설교통부장관”으로 하고, 동조 제2항 중 “건설부장

관”을 “건설교통부장관”으로, “시장·군수”를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으로 한다.

제3조 제1항 중 “(이하 “시·군”이라 한다)”를 “(이하 “시·군·구”라 한다)”로, “시장·군수가”를 “시장·군수·구청장 이”로 하고, 동조 제2항 중 “시·군”을 “시·군·구”로 한다.

제3조의 2 제1항 중 “9란”을 “8란”으로, “건설부령”을 “건설교통부령”으로, “기부 체납”을 “기부채납”으로 하고, 동조 제2항 중 “10란”을 “9란”으로, “건설부령”을 “건설교통부령”으로 하며, 동조 제3항 중 “11란”을 “10란”으로, “건설부령”을 “건설교통부령”으로 하고, 동조 제4항 본문 중 “11란”을 “10란”으로, “건설부령”을 “건설교통부령”으로 하며, 동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동항 제4호 중 “제19 조의 2”를 “제2조 제11호”로 한다.

2.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 
률 제39조·제41조·제41조의 2 및  
제57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 
공판장·농수산물집하장·농수산물종  
합처리장 및 농수산물물류센타를 설  
치하는 경우

제3조의 2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 제6항 중 “11란”을 “10란”으로, “제9 호”를 “제8호”로, “건설부령”을 “건설교통부령”으로 한다.

⑤ 영 별표 1 중 10란의 사업명란에서

“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 
준도시지역에서의 개발해우이로서 건설  
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”이라 함은 국  
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서  
행하는 별표 2에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.  
제3조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 4(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) 영  
제9조 제3항 제2호에서 “건설교통부령  
이 정하는 경비”라 함은 다음 각호의  
경비를 말한다.

1.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 
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양보증  
또는 주택임대보증에 따른 수수료
2. 영 제9조 제3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 
의하여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에 의  
하여 지출한 건축비내역서를 제출한  
경우 도급을 한자가 당해 건축과 관  
련하여 지출한 일반관리비. 이 경우  
일반관리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영 제  
1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.

3. 기타 건축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  
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비 제4조 제  
1항 중 “건설부령”을 “건설교통부령”  
으로 하고, 동조 제2항 중 “시장·군  
수”를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으로 한  
다.

제4조의 2 본문 중 “건설부령”을 “건설교  
통부령”으로, “기관등”을 “기관”으로 하  
고, 동조 제3호 중 “지방세법 제110조의

4 제1항”을 “지방세법 제291조 제1항”으로 한다.

제4조의 3·제9조 및 제10조 제3항 중 “시장·군수는”을 각각 “시장·군수·구청장은”으로 한다.

제11조 제3항 및 제12조 제3항 중 “시장·군수가”를 각각 “시장·군수·구청장은”으로 한다.

제14조 제1항 본문 중 “시장·군수”를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으로 하고, 동조 제2항 중 “개발비용산출기초자료”를 “개발비용산출증빙서류”로 한다.

제1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 2(대상사업의 고지) ①영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고지는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등의 통보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②영 제20조의 2에서 “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사업명
2. 대상토지의 위치 및 면적
3. 법 제20조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산출내역서의 제출의무 및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

별표 1의 제목 중 “(제3조의 2 제1항 관련)”을 “(제3조의 2 제3항 관련)”으로 하고, 동표 제1호 중 “식당”을 “일반음식점”

으로 하며, 동표 제2호 중 “대중음식점”을 “일반음식점”으로 한다.

별표 2 제1호 중 “제12호”를 “제10호·제12호”로, “(중기관련시설을 포함한다)”를 “(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)”로 하고, 동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가목·파목 및 머목의 골프장업·골프연습장업 및 썰매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

별지 제5호 서식의 납부고지서(부본)의 앞면·개발부담금납부고지(통지서)의 앞면·납입통지서의 앞면 및 납부영수증서의 앞면 중 부담금액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납부금액(납기내)	
납부	국가
금액의	시·도
배분	시·군·구

별지 제15호 서식 앞면 중 “15일”을 “즉시”로, “신고합니다.”를 “제출합니다.”로, “신고인”을 “제출인”으로 하고, 동서식 앞면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, 동서식 뒤면을 삭제한다.

구비서류: 설계서 등 개발비용산출증빙서류

별지 제17호 서식 중 “수신: 시장·군수”를 “수신: 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을 한다.

별지 제18호 서식 중 “발신：시장·군수”  
를 “발신：시장·군수·구청장”으로 한다.  
별지 제19호 서식 중 “수신：건설부장관”  
을 “수신：건설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행한다.

②(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 관한 적용례)  
제3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 
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종료되는 사업분부  
터 적용하고,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 
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사업인가  
등을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.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

주택회보